

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6년 11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대국민 사과' 신동빈 "준법경영위 설치해 윤리경영 우선시 하겠다."
- 권익위, 외국기업 대상 '청탁금지법' 소개
- 폭스바겐, 옥시, 외국계 담배사 등 비윤리 경영 질타
- 노운하 파나소닉코리아 대표 "공존공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
- 대응제약, 임직원대상 김영란법 교육 진행... '윤리경영 실천 목표'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인천국제공항공사 - 윤리경영프로그램

3. 청렴 위반 사례

- 수수 금품의 불우이웃 성금 사용
- 금품 반환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4. 지식마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Part3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대국민 사과’ 신동빈 “준법경영 위 설치해 윤리경영 우선시 하겠다”

신 회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검찰 수사로 다시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그 동안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보좌하면서 그룹경영에 참여해왔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이룩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그룹이 처한 상황과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깊이 고민한 끝에 새로운 롯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롯데는 신 회장 직속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법경영위원회를 구축하고 그룹과 계열사의 준법경영 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 오는 2020년까지 매출 200조원으로 아시아 톱10 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그 동안의 목표를 조정하기로 했다. 외형 성장에만 집중한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부족했다는 자성 때문이다.

신 회장은 이어 “경영권 분쟁 역시 더 이상의 혼란 없이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영쇄신은 물론 롯데가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743667&year=2016>

2. 권익위, 외국기업 대상 ‘청탁금지법’ 소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2016 암참 고위경영진 윤리경영 & 위기관리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의 의의와 우리사회의 긍정적 변화 등을 소개하고 외국기업인들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다.

기업 경영진, 실무자,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 임직원들의 윤리경영 및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소개와 윤리경영 정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 공유와 토론 등을 통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 동안 우리사회의 온정·연고주의에 기반한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 기업들의 고충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한 외국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http://www.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53>

최근 동향 및 소식

3. 폭스바겐, 옥시, 외국계 담배사 등 비윤리 경영 질타

외부감사를 피하려 유한회사로 전환하고 본사에는 거액 배당을 해 주면서 우리 사회 환원에는 관심이 없는 외국계 기업의 경영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마련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이익만 빼가고 사회 환원이나 재투자는 거의 없다”고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폭스바겐이나 옥시 사태에 이어 외국계 담배회사의 세금 탈루까지 외국계 기업들의 불법경영과 비윤리적 행태가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에도 공시의무와 외부감사 제도가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제도적인 문제를 지적한 견해에 동의한다”며 “유한회사를 외부감사의무 대상으로 확대하는 외감법 전부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http://www.bithub.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6>

4. 노운하 파나소닉코리아 대표 “공존공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에 도움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자는 게 파나소닉코리아 사업 철칙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원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운하 대표는 “단순한 시장점유율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다”며 “파나소닉코리아가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고 공헌할 수 있는걸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 만족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뿐 아니라 각종 봉사, 기부 등으로 사회에 이로움을 제공해야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www.etnews.com/20161012000268>

5. 대응제약, 임직원대상 김영란법 교육 진행… ‘윤리경영 실천 목표’

대응제약은 지난 13일 서울시 강남구 대응제약 본사에서 그룹임원 및 직책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응제약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임직원이 숙지하고 향후 업무하는데 있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강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대응제약은 그룹사 전 임직원의 관련 법률 준수를 독려해 윤리경영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15809>

윤리경영 실천 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 - 윤리경영 프로그램

1. 윤리교육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1) 윤리실무위원 워크샵

각 부서별 윤리실무위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1회씩 워크샵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리스크를 발굴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윤리경영 전문가의 강연 등을 통하여 협업부서에서 윤리문화 확산 및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SR실무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 전직원 윤리 특강

월례조회 시간을 이용하여 윤리경영과 관련된 명사를 초빙하여 교양 강좌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직원들이 윤리경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 온라인 교육

공사의 윤리경영, 청렴 및 사회책임경영의 최근 동향과 관련된 지식을 동영상 캐릭터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직원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윤리경영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5) 협력사 윤리경영 담당자 교육

공항운영 협력사 40여개사의 윤리경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윤리 워크샵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각각의 협력사에 제공하여 직원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항 전반에 윤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 윤리실무위원 워크샵

매 분기마다 윤리, 반부패, 청렴 등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여 각각의 현업부서에서 토의하고, 토의 결과 및 제안 내용을 윤리경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송부하여, 제도개선 및 윤리경영의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윤리경영 실천 사례

2. 윤리실천프로그램

1) 윤리레터

윤리경영 최신동향 및 사내·외 윤리관련 뉴스, 청렴 관련 Q&A 등으로 구성된 뉴스레터를 매월 1회 전직원 및 협력사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윤리경영 뉴스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2) 윤리동영상/자가테스트

임직원 행동강령의 적용사례에 대하여 재미있는 플래시 동영상,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자가테스트 배너 등을 제작하여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직원들이 어렵게만 느껴왔던 윤리경영과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직원들이 쉽게 접근하여 알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3) 홍보물 제작/배포

직원들의 윤리경영 인식 향상을 위해 윤리딜레마 사례집, 임직원 준칙카드 등 윤리경영 및 청렴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실제 업무수행시 수시로 윤리규정을 상기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4) 청렴컨텐츠 공모

매 분기마다 윤리, 청렴, 반부패 등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여 각 현업부서에서 토의하고, 토의결과 및 제안내용을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송부하여, 제도개선 및 윤리경영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5) 윤리의 달 캠페인

매년 추석이 있는 달에 전사적으로 윤리경영 캠페인을 진행하여, 명절 전후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또는 비리행위 근절을 위해 직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명사를 초청하여 강연하거나,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6) 임직원 윤리규정 준수서약

매년 초 전 직원의 윤리규정 준수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내 전자시스템의 팝업(Pop-up)창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규정 준수자율 서약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3. Clean Compact

환경, 노동, 인권, 반부패 등의 분야에 대하여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의 정신을 인천공항에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기업이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문화를 공항 전반에 확산하고자 2007년부터 공항 상주기관, 협력사, 입점업체 등과 함께 인천공항 Clean Compact의 이행을 통해 인천공항만의 독특한 사회책임경영 문화 확산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나아가고 있다.

1) Clean Compact 발전 단계

대상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3년
공사	투명 윤리	투명 윤리 환경	투명 윤리 환경 에너지 사회공헌	투명 윤리 환경 에너지 사회공헌 동반성장	안전 투명 윤리 환경 에너지 사회공헌 동반성장 소통 협업
협력사					
상주기관	-				
항공사	-	-			
입점업체	-	-			
물류업체	-	-	-		
3단계 건설 참여사	-	-	-	-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http://www.airport.kr/>

청렴 위반 사례

1 수수 금품의 불우이웃 성금 사용

○○초등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아버지인 B는 1학년 1반 담임선생님 A에게 좋은 일에 사용하라고 하며 다른 동료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50만원을 주었는데, 교사 A는 5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불우이웃 성금으로 낸 경우

시사점 :

- ① 학생지도 등을 직무로 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A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의 부모와 직무 관련성이 있음
- ② 교사 A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부모 B로부터 받은 50만원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고, 이를 수수한 이상 그 용도가 불우이웃 돕기 등 선의의 것으로 사용되더라도 법 위반행위 성립
- ③ 교사 A는 직무와 관련하여 50만원을 받았으므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학부모 B는 직무와 관련하여 A에게 50만원을 제공하였으므로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④ 교사 A와 학부모 B의 관계, 수수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었다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볼 수 없음

2 금품 반환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 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 A가 사회복지사 B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 받았는데, 일주일 후 공무원 A가 사회복지사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경우

시사점 :

- 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받은 금품 등을 지체없이 반환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됨
- 공무원 A가 접대를 받은 후 반대로 제공자인 사회복지사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접대를 한 것을 지체 없이 금품 등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② 공무원 A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사 B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의 접대를 받았으므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공자인 사회복지사 B는 공무원 A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하였으므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지식마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Part3

스마트위슬 윤리경영 뉴시레터 10월호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번 11월호에서는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1.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
- ※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
 -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 각종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 병역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평가·판정 관련 직무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 인·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만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행위에 해당
 - 법령·기준상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7가지 행위는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
-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 기준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
 - 14가지 대상 직무 외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2.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7가지 부정청탁 예외 사유를 규정
 -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 구제·해결 요구 및 관련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의 제안·건의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및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법정기한 내 직무 처리 신청·요구 및 진행상황·결과 등에 대한 확인·문의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지식마당

3. 부정청탁 처리 절차

※부정청탁 신고(공직자등)⇒신고내용 확인(소속 기관장) ⇒수사기관 통보 혹은 과태료 부과 통보 (소속기관장) ⇒기록·관리 및 공개

-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
- (소속기관장) 신고 내용 확인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자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 통보
-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 참여 일시 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시행

가. 부정청탁의 거절의무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거절의무를 부과

나. 부정청탁의 신고

-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
 -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법 제7조제1항)
 -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 발생(법 제7조제2항)
- 신고방법
 -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으로 신고

다.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 공개여부의 결정
 -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음

▪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만을 공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공개내용은 해당 공공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음

4. 위반 시 제재

가. 징계

- 공직자등이 법 및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을 해야 함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한 경우 법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는 해당

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 소속기관의 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행위 주체		구성요건		제재 수준
		사인	유형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	사인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국민권익위원회)

Quiz

1. 다음 중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아닌 곳은?

- ①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 ②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 ③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 ④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 다음 중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② 공공기관에 법정기한 내 직무 처리 신청·요구 및 진행상황·결과 등의 확인·문의
- ③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④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3. 다음 중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①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 ②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 ③ 제3자인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 ④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4. 다음 중 부정청탁 처리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 ① 공직자 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다.
- ②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한다.
- ③ 소속 기관장은 부정청탁의 예방효과 달성을 위하여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부정청탁을 신고한 제3자의 신원은 반드시 공개한다.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④ 국내 10대 대기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답 ④ 수사·재판·심판 등과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준사법적인 각종 결정 등은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답 ③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답 ②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하여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

관련 행사

1. 암참, '윤리경영 및 위기관리 세미나' 개최...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초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준수 등 윤리경영을 위한 '2016 암참 고위경영진 윤리경영 및 위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란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국민권익위원회 전 위원장)이 초대돼 강연했다.



올 해로 첫 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암참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청탁금지법을 포함해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 관련 정책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날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는 암참 회원사의 고위경영진 및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L2TZ2R0DN>

2. 김천시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렴실천 협약

김천시는 21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청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협의회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천시와 혁신도시에 입주한 12개 공공기관은 청렴실천 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2016년 반부패 청렴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논의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마련 등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들 기관은 협약의 협력강화를 위한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약 기관 간 협력·발전 등의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약사항이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672865>

3. 공정위, 개도국에 공정거래법 연수 과정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9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14개국 28명의 경쟁당국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연수센터에서 '경쟁법과 시장 경제 발전'의 공정거래법 연수 과정을 실시한다.

공정위 직원들이 경쟁당국의 조직 등을 비롯한 4개 분야 11개 강좌를 강연하고 질문과 답변(Q&A)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연수로 직접적 기술 지원 효과는 물론 우리의 발전된 공정 거래 제도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1614>